

제334회 정례회
2014.09.30.(화)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09.30.(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14년 09월 03일

다. 회부일자: 2014년 09월 11일

라. 상정일자: 2014년 09월 16일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관 정항수)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 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2) 의견수렴 방법 및 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 4) 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5조)
- 5) 위원회 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정대회)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여론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와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 제출 절차를 정함.

-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조례안이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을 기초로 제정하여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정의를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만 정하여 기 제정된 타 시·도의 조례1)나 조례 모델안2)에서 주민의 정의를 폭 넓게 하여 의견 수렴 범위를 다양화 한 것에 비하면 도교육청은 타시·도 전입 학구(군) 학부모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기업활동을 하는 실업가의 의견 제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모델안의 취지에 불 부합 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첨부서류: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1) 예시: ① 00도 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 ② 00도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예시: ① 00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② 00시(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의견제출) 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방법)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절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4.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재정 및 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인원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6조(위원에 대한 교육)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8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 등)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체

□ 지방재정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 2014.11.29.] 제3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